

제6회 원규심의위원회

2015. 12. 17.(목)

# 심 의 안 건

서울연구원

The Seoul Institute



# 순서

---

1. 정원외직원임용규칙 일부개정(안) .....	1
2. 직원승진규칙 일부개정(안) .....	3
3. 징계위원회운영규칙 일부개정(안) .....	5
4. 직원대외활동규칙 일부개정(안) .....	10

## 정원외직원임용규칙 일부개정[안]

### 1. 의결주문

정원외직원 임용규칙 개정(안)을 다음과 같이 의결한다.

### 2. 제안사유

- 2016년도 정원외직원 인건비 인상률(3%)이 확정됨에 따라 정원외 직원 임용규칙 중 제13조(보수)의 [별표2] ‘정원외직원 계약금액 산정 기준’을 개정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인건비 인상률 : 3%
- 인상률 적용방법 : 정액 50%(546천원/연봉기준) + 정률 50%(1.5%)
- 세부내용 : 붙임참조

### 4. 시 행 일

이 규칙은 2016. 1. 1. 부터 시행한다.

## 2016년 정원외직원 계약금액 산정기준

[단위 : 천원/월]

구분	직급	등급	계약금액	산정기준
초빙연구원	초빙선임 연구위원	가	4,422	예산의 범위내에서 경력, 연구실적, 사회적 지위 등을 참고하여 원장이 정함.
		나	4,257	
		다	4,091	
	초빙 연구위원	가	3,783	예산의 범위내에서 경력, 연구실적, 사회적 지위 등을 참고하여 원장이 정함.
		나	3,618	
		다	3,453	
	초빙 부연구위원	가	3,420	박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연구경력 3년 이상인 자 또는 원장이 동등 이상의 경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나	3,255	박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연구경력 1년 이상 3년 미만인 자 또는 원장이 동등 이상의 경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다	3,090	박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연구경력 1년 미만인 자 또는 원장이 동등 이상의 경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위촉 연구원 · 연구 보조원	위촉 연구원	가	2,627	석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연구경력 3년 이상인 자 또는 원장이 동등 이상의 경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나	2,518	석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연구경력 1년 이상 3년 미만인 자 또는 원장이 동등 이상의 경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다	2,409	석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연구경력 1년 미만인 자 또는 원장이 동등 이상의 경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연구 보조원	가	2,101	학사학위 취득 후 연구·행정경력 3년 이상인 자 또는 원장이 동등 이상의 경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나	1,990	학사학위 취득 후 연구·행정경력 1년 이상 3년 미만인 자 또는 원장이 동등 이상의 경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다	1,879	학사학위 취득 후 연구·행정경력 1년 미만인 자 또는 원장이 동등 이상의 경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운영직원	운영직원	가	2,101	학사학위 취득 후 연구·행정경력 3년 이상인 자 또는 원장이 동등 이상의 경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나	1,990	학사학위 취득 후 연구·행정경력 1년 이상 3년 미만인 자 또는 원장이 동등 이상의 경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다	1,879	학사학위 취득 후 연구·행정경력 1년 미만인 자 또는 원장이 동등 이상의 경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 직원승진규칙 일부개정[안]

### 1. 의결주문

직원승진규칙 개정[안]을 다음과 같이 의결한다.

### 2. 제안사유

- 징계처분 시 승진임용제한 기간을 인사규정의 기간과 동일하게 개정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인사규정 제24조(승진의 제한) 개정사항을 직원승진규칙에 반영

### 4. 시행일

이 규칙은 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조표

현 행	개 정 (안)
<p>제5조(승진임용 제한) ① (생략)</p> <p>1. (생략)</p> <p>2. 징계처분의 집행이 완료된 <u>날</u> <u>부터</u> 다음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p> <p style="margin-left: 20px;">가. 정 직 - <u>12월</u></p> <p style="margin-left: 20px;">나. 감 봉 - <u>6월</u></p> <p style="margin-left: 20px;">다. 견 책 - <u>3월</u></p>	<p>제5조(승진임용 제한) ① 현행과 같음</p> <p>1. 현행과 같음</p> <p>2. 징계처분의 집행이 완료된 <u>날</u> (<u>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으로 인한 징계처분의 경우</u> <u>에는 각각 3개월을 가산한 기간</u>) <u>부터</u> 다음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p> <p style="margin-left: 20px;">가. 정직, 강등 - 1년 6개월</p> <p style="margin-left: 20px;">나. 감 봉 - 1년</p> <p style="margin-left: 20px;">다. 견 책 - 6개월</p>

## 징계위원회운영규칙 일부개정[안]

### 1. 의결주문

징계위원회운영규칙 개정[안]을 다음과 같이 의결한다.

### 2. 제안사유

- ‘박원순법’ 관련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혁신수행과제 요구사항

### 3. 주요내용

- 성희롱 처벌강화

현 행	개 정 안
견책이상	강등이상

- 예산회계 및 물품관리 징계사유 ‘다~바’의 징계양정세부기준을 ‘정직 이상’으로 강화
- 징계의 종류 추가 : 징계의 종류 중 누락된 ‘강등’ 추가
- 부패공직자 처벌강화
  - 직무 및 대가, 수수금액을 불문하고 금액을 수수한 경우 정직이상으로 징계양정을 강화
  - 징계양정 강화에 따른 직무관련 양정을 정직이상으로 개정

### 4. 시행일

이 규칙은 원장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조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징계의 종류) 징계는 중징계인 파면, <u>해임</u>, <u>정직</u>과 경징계인 감봉과 견책으로 구분한다.</p>	<p>제3조(징계의 종류) 징계는 중징계인 파면, <u>해임</u>, <u>강등</u>, <u>정직</u>과 경징계인 감봉과 견책으로 구분한다.</p>

## 징계양정세부기준

현 행								개 정 안									
구 분	징 계 사 유	징 계 기 준						비 고	구 분	징 계 사 유	징 계 기 준						비 고
		파면	해임 이상	강등 이상	정직 이상	감봉 이상	견책 이상				파면	해임 이상	강등 이상	정직 이상	감봉 이상	견책 이상	
1. 복무 및 품위	1. 복무위반								1. 복무 및 품위	1. 복무위반							
	바. 직장 내 강간, 성폭력 등 성범죄							국가인권위원회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을 근거로 징계사유 해당여부 판단		바. 직장 내 강간, 성폭력 등 성범죄							국가인권위원회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을 근거로 징계사유 해당여부 판단
	(1) 강간 및 강간미수, 성폭력	○								(1) 강간 및 강간미수, 성폭력	○						
	(2) 성추행			○						(2) 성추행			○				
	(3) 성희롱						○			(3) 성희롱·성매매			○				
3. 예산회계 및 물품관리	1. 예산, 회계사무의 부적정								3. 예산회계 및 물품관리	1. 예산, 회계사무의 부적정							
	가. 예산의 편법집행 등 부정사용, 권리소홀						○			가. 예산의 편법집행 등 부정사용, 권리소홀						○	
	나. 예정가격 누설				○					나. 예정가격 누설				○			
	다. 예정가격조서의 위법·부당 작성						○			다. 예정가격조서의 위법·부당 작성				○			
	라.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입찰자 및 낙찰자 결정						○			라.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입찰자 및 낙찰자 결정				○			
	마. 물품 및 공사의 부당 분할발주계약						○			마. 물품 및 공사의 부당 분할발주계약				○			
	바. 위법·부당한 접수 및 검사						○			바. 위법·부당한 접수 및 검사				○			
	사. 위약금의 미징수 기타 손실 초래						○			사. 위약금의 미징수 기타 손실 초래						○	
	아. 허위 지출증빙서 작성					○				아. 허위 지출증빙서 작성					○		
	자. 기타 회계상의 부정						○			자. 기타 회계상의 부정						○	

## 청렴의무위반징계양정기준

현 행							개 정 안						
징 계 사 유	징 계 기 준					비고	징 계 사 유	징 계 기 준					비고
	파면	해임 이상	정직 이상	감봉 이상	견책 이상			파면	해임 이상	<b>강등 이상</b>	정직 이상	감봉 이상	
1. 업무상 횡령 및 배임 가. 공금(물)횡령 나. 공금유용 (1) 고의, 중과실 (2) 경과실(소액) 다. 업무상 배임 (1) 고의, 중과실 (2) 경과실(소액)	○			○		고의·과실 및 비위 정도의 경 중에 따라 가감	1. 업무상 횡령 및 배임 가. 공금(물)횡령 나. 공금유용 (1) 고의, 중과실 <b>(2) 경과실(소액)</b> 다. 업무상 배임 (1) 고의, 중과실 <b>(2) 경과실(소액)</b>	○			○		고의·과실 및 비위 정도의 경 중에 따라 가감
2. 금품·향응수수 등 가. 직무 관련자로부터 의례적인 금품이나 향응 등 수수 (1) 100만원 미만 (2) 1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수동) (3) 1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능동) (4) 3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5) 500만원 이상 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향응 등을 수수하고 위법·부당한 처분은 하지 않은 경우 (1) 100만원 미만(수동) (2) 100만원 미만(능동) (3) 1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4) 300만원 이상 다.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향응 등을 수수하고 위법·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 (1) 100만원 미만	○			○			1. 100만원 미 만의 금품·향 응 요구, 정 기·상습 수 취·알선시 : 해임이상  2. 고의·과 실 및 비위 정도의 경 중에 따라 가감	2. 금품·향응수수 등 가. 직무 관련자로부터 의례적인 금품이나 향응 등 수수 <b>(1) 100만원 미만</b> (2) 1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수동) <b>(3) 1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능동)</b> (4) 3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5) 500만원 이상 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향응 등을 수수하고 위법·부당한 처분은 하지 않은 경우 <b>(1) 100만원 미만(수동)</b> <b>(2) 100만원 미만(능동)</b> (3) 1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4) 300만원 이상 다.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향응 등을 수수하고 위법·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 (1) 100만원 미만	○			○	

현행							개정안							
징계사유	징계기준					비고	징계사유	징계기준					비고	
	파면	해임 이상	정직 이상	감봉 이상	견책 이상			파면	해임 이상	<b>강등 이상</b>	정직 이상	감봉 이상		견책 이상
(2) 100만원 이상 라. 위법·부당한 업무처리 <u>창탁</u> 으로 금품중개 행위 마. 직무관련 정보제공 등 업무편의 조건으로 금품중개 행위	○		○				(2) 100만원 이상 라. 위법·부당한 업무처리 <u>창탁</u> 으로 금품중개 행위 마. 직무관련 정보제공 등 업무편의 조건으로 금품중개 행위	○			○			
3. 직무 및 대가, 수수금액을 불문하고 금품을 <u>수</u> 수한 경우				○			3. 직무 및 대가, 수수금액을 불문하고 금품을 <u>수</u> 수한 경우				○			100만원미만금 품수수시(능동) : 해임이상

## 직원대외활동규칙 일부개정[안]

### 1. 의결주문

직원대외활동규칙 개정[안]을 다음과 같이 의결한다.

### 2. 제안사유

- 국민권익위원회 공직자 외부강의 제도개선 방안 권고

### 3. 주요내용

- 대외활동 횟수 및 시간 제한

현 행	개 정 안
-	월 3회 · 6시간

### 4. 시행일

이 규칙은 2016. 1. 1. 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조표

현 행	개 정 (안)
<p style="text-align: center;">&lt; 신 설 &gt;</p>	<p>제4조의2(대외활동 횟수) 제4조의  <u>대외활동 횟수는 월 3회·6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          유로 월 3회·6시간을 초과하는 경          우에는 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u></p>